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시 : 2025. 11. 26.(수) 10:00
2. 장소 : 본관 1층 대회의실
3. 참석자

구분	인원	성명	비고
참석인원	7	민조홍*, 안등용**, 민병원, 반지민, 이명경, 한은주, 김유환	안동인(간사)
불참인원	5	문혜성, 김관창, 배성아, 서유리, 한유경	

* 의장 ** 부의장

4. 안건

- 제1호의안: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 제2호의안: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 제3호의안: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5. 개회선언

- 가. 간사는 문혜성, 김관창, 배성아, 서유리, 한유경 평의원이 불참하였음을 알리고, 전체 평의원 12명 중 7명 참석으로 과반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 나. 의장은 개회를 선언하다.

6. 안건 심의

가. 심의사항

- 제1호의안: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 (1) 의장은 제1호의안으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간사에게 안건 설명을 요청하다.
- (2) 간사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요청에 따라 추천감사 1인의 선출을 위하여 각 구성단위에서 위원을 추천받아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대학평의원회는 3인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설명하다.

- (3) 의장은 회의 전에 평의원들에게 배부했던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관련 자료에 대하여 설명한다. 지난 8월의 개방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개방이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학평의회회 개방이사 추천위원(민조홍, 안등용, 반지민) 명의로 교수평의회 명의로 학교법인에 두 차례 보냈다고 말한다.
- (4) 의장은 우리 학교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은 이화학당 정관에 따라 법인 추천위원 4명, 대학평의회 추천위원 3명, 학교운영위원회 추천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고 말한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개방이사 추천위원 9명 중 5명을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이와 관련해 법인에 문의했으나, 법인으로부터 “대학평의회 추천위원 3명 외에 학교운영위원회 추천위원 2명이 있어 법인 추천위원 4명으로 과반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 법령 및 정관상 위법성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법인이 임명한 학교장들로 구성되어 있어 독립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며, 지금까지 대학평의회가 추천한 개방이사가 법인 개방이사로 선임된 사례도 없어서, 현재와 같은 위원 구성에서는 앞으로도 대학평의회 추천 후보가 개방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화학당 정관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5) 김유환 평의원은 연세대학교의 경우 대학평의회에서 5명을 추천하는 사유를 문의하고, 의장은 연세대학교는 부속 학교가 없어서 대학평의회에서 5명을 추천한다고 답변한다.
- (6) 반지민 평의원은 추천감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들이 추천한 후보자들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한 명을 법인에 단수 추천하고 법인에서 선임하는 절차가 맞는지 확인하고, 이와 별도로 신임 이사장 선출 과정과 앞으로 이사회가 어떻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해서도 문의한다.
- (7) 의장은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지만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는 없기 때문에 이사회에 개방이사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견제 장치라고 본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중요한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평의회에서 항의 서한을 보내거나,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 (8) 민병원 평의원은 이사장 선출은 이사회 권한이므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보며, 그동안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한 후보자가 한 번도 개방이사로 선임되지 않은 것은 민주적 구성과 다양성을 포용하는 가치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또한 대학평의회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꾸준히 후보자를 추천해 왔음에도 단 한 번도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회의감이 든다고 밝힌다.
- (9) 김유환 평의원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므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면 특단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다
- (10) 반지민 평의원은 김유환 평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현행 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은 법

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므로 항의 서한을 반복해서 보내거나 정관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기보다 대학평의원회에서 정관을 어떻게 개정할지 논의 및 의결하여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다.

- (11) 안등용 평의원은 법인을 견제할 세력이 부족하다는 의장의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위법한 것과 부당한 것은 분명히 구별해야 하며, 현재 상황에서 위법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서한이나 항의문을 보내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동력과 분명한 명분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 부분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한다.
- (12) 김유환 평의원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상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추천위원수를 합하면 과반수를 상회하게 되므로, 이들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을 경우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법인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개방이사들만 선임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 (13) 안등용 평의원은 의장에게 지금 시점에서 대학평의원회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다.
- (14) 의장은 첫 번째 현행처럼 위원 3명을 추천하는 방안, 두 번째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방안, 세 번째는 대학평의원회 명의로 법인 개혁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방안 등이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 (15) 반지민 평의원은 의장이 제시한 위원 추천 거부나 서한 발송 등 다양한 대응 방식의 핵심은 구성원들의 공감대 확보에 있다고 말한다. 현재 교수평의회 내의 논의는 활발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구성단위와의 직접적인 조율이나 공동 대응 노력은 충분하지 않아 직전처럼 서한을 보내거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구성원들의 공감대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이나 이사회 관련 사안에 대응할 때는 사전에 대학평의원회 차원에서 구성단위 간 의견을 조율하고 대책을 공유한 후에 서한 발송이나 면담 등의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16) 민병원 평의원은 의장이 여름부터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교수평의회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이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말하고, 또한 학생회와 직원 노조와도 접촉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인다.
- (17) 이명경 평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과제는 아니라고 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충분히 숙고할 시간과 각자의 의견을 정리할 계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구성원들과의 지속적인 미팅과 연락,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심사숙고하며 시간을 두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인다.
- (18) 안등용 평의원은 직원들이 학교법인의 경영권의 고유 권한과 그에 대한 개입 가능 범위에 대하여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반지민 평의원이 강조했듯이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먼저 모든 구성원이 정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뒤 법인에 문제 제기할 경우, 법인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명경 평의원의 의견처럼 이 사안은 장기간에 걸친 추진이 필요하며, 현 의장의 임기 내에 해결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속성을 확보하여 꾸준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다.

- (19) 김유환 평의원은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가 개방이사로 선임된 적이 없는 것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서한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의미 있는 방식이지만, 이것은 다른 대학 구성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 (20) 의장은 본인의 잔여 임기가 짧아 사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게 될까 염려된다고 밝히고, 더불어 각자 소속은 다르지만 이화에 대한 애정은 모두 같다고 강조하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라는 진리를 언급하고, 이번 사안은 학교 전체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각 구성원이 학교를 위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다. 마지막으로, 단기간에 처리하기보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여러 평의원들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한다.
- (21) 의장은 평의원들에게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묻고 평의원들의 동의로 3명의 위원을 추천하기로 하다.
- (22) 의장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추천위원으로 지난번과 동일하게 교수평의원 1명, 직원평의원 1명, 학생 평의원 1명을 제안하였으나, 안등용 평의원은 추천위원 참여를 고사하며 다른 평의원이 추천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의장은 안등용 평의원 대신 김유환 평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하고, 이에 대해서 모든 평의원이 찬성하다.
- (23) 의장은 의장, 반지민 평의원, 김유환 평의원을 대학평의원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묻고, 모든 평의원이 동의하여 만장일치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3명을 선출하였음을 선포하다.

□ 제2호의안 :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 (1) 의장은 제2호의안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간사에게 안건 설명을 요청하다.
- (2) 간사는 첫째는 지난 8월 말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통과한 특수대학원 간호대학원을 학칙 제4조에 추가하는 안이라고 말한다. 둘째는 2028학년도 학부 편제 및 정원조정 사항을 학칙 제5조 별표1에 반영하는 안으로서, 이 안은 조형예술대학 내 섬유·패션학부를 폐지하고 그 소속 전공들을 조형예술학부로 변경하며, 패션디자인 전공 명칭을 패션예술 전공

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현재 학부(3개 학부)와 대학원(2개 학부)의 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인다. 또한 셋째는 학칙 제35조의7항에 창업 대체 학점 인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넷째는 다른 대학들의 추세를 참고하여 학칙 제39조에서 재수강 학점 상한을 현행 A-에서 A0로 조정하여 학생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이며, 마지막은 학부생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를 수정하고 절차 및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49조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 (5) 반지민 평의원은 2028학년도 학부 편제 및 정원 조정 결과의 학칙 제5조의 별표1 반영에 대하여 상세 설명을 요청하다.
- (6) 간사는 섬유·패션학부가 2013년 신설된 후 2016년 의류학전공이 신산업융합대학으로 이동하여 현재 두 개 전공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타 학부보다 소규모이고, 대학원 체제(조형예술학부, 디자인학부)와의 일원화를 통해 학부-대학원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며, 두 학부 모두 전공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여 입학전형 및 모집단위에 변동이 없고 동일한 실기고사를 실시하는 등 선발 방식이 유사하므로, 통합 시 학문적 연계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하다.
- (7) 민병원 평의원은 학칙 제39조 관련하여 참고한 타 대학들의 사례를 문의하고, 간사는 서울 시내 주요 7개 대학에서 재수강 상한 학점을 A0까지 하고 있으며 우리 학교가 상대적으로 대학원 진학과 취업에서 불리하다는 학생회의 요청을 검토하여 개정하게 되었다고 답변하다.
- (8) 민병원 평의원은 재수강 상한 학점을 A0로 상향하면 재수강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런 취지라면 성적을 제한하지 않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 않냐고 문의하고, 이에 대해 간사는 재수강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학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학사 관리의 엄정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하다.
- (9) 민병원 평의원은 재수강이나 성적 포기 제도 등이 학생들로 하여금 학문보다는 취업이나 자격을 위해 수업을 활용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고, 그 과정에서 학문적 본질에 대한 교수나 학교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어 현장 경험상 재수강 학생은 성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재수강 학점의 성적 상한을 A0로 올리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 (10) 반지민 평의원은 이는 학생회가 학교와 1년 동안 논의한 안건으로, 성적이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 등 학생들의 현실과 밀접한 만큼, 집안 사정이나 개인적 상황으로 당해 연도 수업을 듣지 못할 경우 다시 수업을 들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한다. 학생들은 학점포기제 도입을 가장 희망했으나, 학교 본부와의 논의 끝에 재수강 학점 상향 조치로 결정되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온전히 누리면서 성적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번 A0 상향 조정도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라는 의견이라고 덧붙인다.

- (11) 민병원 평의원은 이런 성적 인플레이션 정책은 결국 외부에서 대학 성적을 신뢰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규정이나 조항을 손질할 때 교육부 등에서도 고민해야 하며, 성적을 일괄적으로 올려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교육 철학을 고민하는 분들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인다.
- (12) 의장은 A학점을 줄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는 상대평가와 달리, 학생들에게 별다른 제한 없이 학점을 줄 수 있는 절대평가 체계가 더 문제라고 지적하고, 교수들이 학생들의 인기에 영합해 학점을 남발하면 학교 경쟁력이 약화되고 선의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말하며, 교무처에서 절대평가 제도에 대하여 논의해 줄 것을 건의하다.
- (13) 의장은 조형예술대학 편제 조정에 관해서는 단과 대학 내에서 사전 조율하고 소속 교수들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고 말한다.
- (14) 의장은 학칙 개정안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는지 묻고, 개정안 심의에 통과한 것으로 확인 후 심의를 종료하다.

□ 제3호의안 :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 (1) 의장은 제3호의안으로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간사에게 안건 설명을 요청하다.
- (2) 간사는 먼저 지난번에 석사학위 수료 요건을 별표로 정리하였던 예와 같이, 대학원 학칙 제22조에 학기당 취득학점의 내용이 원칙과 예외의 구조로 나열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을, 제1항은 일반대학원에 대한 사항으로 정리하고, 전문·특수대학원에 대한 사항은 기존에 별표로 정리되어 있던 경영전문대학원을 제외하고 새롭게 별표4로 정리한 후, 이에 맞추어 인용 조항을 수정했다고 말한다.
- (3) 의장은 지난번 대학평의원회에서 한유경 평의원이 건의했던 내용인지 질문하고, 간사는 조항은 다르지만 같은 맥락에서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정리한 사안이라고 말한다.
- (4) 간사는 두 번째는 간호대학원 관련 사항이라고 말한다. 간호대학원 전문간호학과의 경우 수료 학점 35학점이 모두 필수 학점이기 때문에 커리큘럼상 학기당 1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 학기가 발생하므로, 이에 따라 학기당 수강 가능 학점을 12학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제22조제2항 별표4의 내용이며, 간호대학원 통합간호학과의 석사 학위논문 대체 요건으로 연구 실적 승인을 추가하는 내용이 제29조제5항과 제32조의2제3항의 내용이라고 설명하다. 다음은 앞에서 학칙 제49조 개정과 연계된 내용으로 학부생들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원 학칙 제25조에 명시된 수강 가능 교과목의 명칭을 “석사학위 과정 교과목”에서 “대학원연계교과목”으로 개정하는 안이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지

난 8월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조형예술대학 영상예술협동과정을 폐지하고 신설된 조형예술학부 영상예술 세부전공의 학위명을 신설하는 안이며, 폐지된 영상예술협동과정에 남아 있던 학생들은 모두 조형예술학부로 소속을 변경하게 된다고 덧붙이다.

- (5) 의장은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는지 묻고, 개정안 심의에 통과한 것으로 확인 후 심의를 종료하다.

7. 폐회선언

의장은 안건 심의 종료를 알리고 폐회 선언하다.

2025년 11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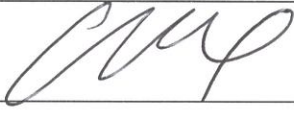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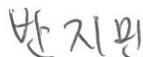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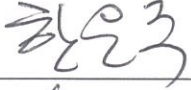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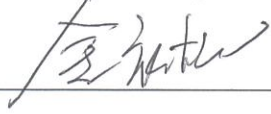
의 장 민 조 흥

민조흥 (인)



대학평의회 2025년 제6차 회의

일시	2025. 11. 26.(수) 10:00	장소	본관 대회의실
안건	1.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2.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3.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구분	성명	서명
교수 평의원	민조홍	
교수 평의원	문혜성	
교수 평의원	민병원	
교수 평의원	김관창	
직원 평의원	안등용	
직원 평의원	배성아	
학생 평의원	반지민	
학생 평의원	서유리	
동창 평의원	이명경	
동창 평의원	한은주	
대학발전 평의원	김유환	
대학발전 평의원	한유경	